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조치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 2)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대통령령 제 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외국환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의 매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외국 금융기관(단, 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시행령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만 허용한다.)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단,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시행령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 신 설 >	제7조(금융회사등) ----- ----- ----- ----- 8. <u>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외국환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의 매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u>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제외한다)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④ ----- ----- ----- 6. 외국 금융기관(단, 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u>시행령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만 허용한다.</u>)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 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 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단,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시행령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증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환증개회사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시행령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753